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3
----------	-----

2019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이현찬 의원(찬성자 11명)
- 나. 제 안 일 : 2019년 5월 24일
- 다. 회 부 일 : 2019년 5월 30일
- 라. 상 정 일 : 제28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현찬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의회가 연1회 개최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년의 시정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 6. 4. ~ 6. 12.)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청을 신설하였으며,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바 있음.

〈청년자치정부〉

□ 개념

- 청년자치정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를 아우르는 명칭임. 서울시 행정조직 '청년청'과 시민 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임.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 총 1,192명
- 성별(성적지향) : 여성 645, 남성 517명, 기타 30명
- ※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지향으로 조사

- 연령별

- 만19세~만24세 : 243명
- 만25세~만29세 : 408명
- 만30세~만34세 : 347명
- 만35세~만39세 : 194명

- 서울청년시민위원(오프라인) : 분과활동(상시)을 통해 신규 정책이나 개선과제를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청년시민회의(연4회)를 통해 정책을 설계, 예산 편성에 참여

- 서울청년시민위원 멤버 : 989명(청년시민위원 3월 모집 기준)

- 성별(성적지향) : 여성 522명, 남성 440명, 기타 27명

※ 성별, 성적체성,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지향으로 조사

- 연령별

- 만19세~만24세 : 277명
- 만25세~만20 : 365명
- 만30세~만34 : 235명
- 만35세~만39 : 112명

- 서울청년정책패널(온라인) :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상시)

○ 청년청(1청 7팀)

-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집행조직



가. 청년의 참여 확대(안 제10조제1항)

- 안 제10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 ----- -----.

- 현재, 청년청에서는 기존의 연1회 시행하던 행사성 ‘청년의회’를 연4회 ‘서울청년시민회의’로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서울청년시민회의〉

<p><input type="checkbox"/>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청년의회」를 「서울청년시민회의」로 확대 개편 및 상설화 ○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폭넓은 참여와 상시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청년시민위원 1,000명 참여 목표, 온라인 청년정책패널 운영 ○ 연1회의 정책제안을 연4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으로 상설화 ○ 구 성 :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19세~39세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정넷 멤버가 될 수 있으며, 청년시민위원(오프라인) 및 청년정책패널(온라인)로 구성 - <u>시정참여교육 1회 이수시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되어</u> 의제발굴부터 예산편성까지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을 결정함. - 청년시민위원(오프라인) : 1,000명(정책제안 500명, 예산편성 500명) - 청년정책패널(온라인) : 인원수 제한 없음 ○ 참여방법 : 연중 수시 온/오프라인 자발적 참여 신청

- 또한,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정례화는 그간 서울시 정책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 무엇보다도 대표성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가 서울시 모든 청년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청년활동가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인 청년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 중심의 서울시정 참여가 또 다른 소외계층을 유발시키는 등 계층간 갈등이나 참여의 불균형 및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청년 제안 정책의 점검 및 평가(안 제10조제2항)

- 안 제10조제2항은 시장은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u>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 ----- <u>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u>

- 서울시는 현재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위원 15%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바,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등 청년의 시정참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청년의 참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청년위원15%목표제 신규 도입〉

- 청년위원 15%목표제 :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확대로 세대균형 시정 도모

- 또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제안을 포함한 시민의 제안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바,
- 동 조항에서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질 우려와 시민의 눈높이에서 거부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15조(관리)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 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담당부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73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 (1명)

찬 성 자 : 김동식, 이광성, 최정순, 이성배,
한기영, 유 용, 김경영, 이동현,
김제리, 김상진, 박기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청년의회가 연1회 개최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청년의 시정 참여를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시정에 대한”으로, “확대하고”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u>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u> <u>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u>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 ⑤ (생략)</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u>시장은 시정에 대한 --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u> ----- -----.</p> <p>② ----- ----- ----- <u>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